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

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친환경 도시계획 운영 단위:도시관리계획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	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		56,425,556	44,729,242	11,696,314
시크트크		[균	33,341,287]		
설교통과		[도	2,773,597]		
		[군	20,310,672]		
친환경 도시계획 운영			586,009	387,471	198,53
도시관리계획			503,860	320,560	183,30
지형도면 제작			503,860	320,560	183,30
201 일반운영비			20,260	15,160	5,10
01 사무관리비			20,260	15,160	5,10
1)일반수용비			2,160		
2)토지이용계획확인원신청서 인쇄	60*3,000장*12개월 =		2,160		
1)도시관리계획(안)계획도면인쇄			2,900		
2)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및관리대장인쇄	300*7종*500매 =		1,050		
2)도면인쇄	2,500*500미 =		1,250		
2)계획(안)인쇄	6,000*100부 =		600		
1)운영수당			8,400		
2)도시계획참석수당	70,000*20명*6회 =		8,400		
1)도시계획관리변경(안)주민열람공고2개신문사	6,800,000 =		6,800		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친환경 도시계획 운영 단위:도시관리계획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202 여비	3,600	5,400	△1,80
01 국내여비	3,600	5,400	△1,8
1)국토이용계획조사작성및용도지역현지조사 50,000*2명*3일*12월 =	3,600		
207 연구개발비	480,000	300,000	180,0
01 연구용역비	480,000	300,000	180,0
1)연구개발비(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제작) 480,000,000 =	480,000		
건강한 녹색교통	15,816	0	15,8
자전거섬조성	15,816	0	15,8
201 일반운영비	15,816	0	15,8
02 공공운영비	15,816	0	15,8
1)시설장비유지비	6,000		
2)자전거섬운영보급자전거유지관리(증도,임자) 6,000,000 =	6,000		
1)공공요금및제세	9,816		
2)자전거섬운영 자전거 손해배상보험료(증도,임자,자은,흑산) 9,816,000 =	9,816		
효율적인 민원처리	47,872	48,630	△7
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 경비	47,872	48,630	△7
201 일반운영비	31,772	32,770	△9
01 사무관리비	31,772	32,770	△9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친환경 도시계획 운영 단위:효율적인 민원처리 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	경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1)수용비		31,772		
2)전문건설업등록에따른 인쇄비(등록수첩외8종)	1,500*9종*200매 =	2,700		
2)국유지(건교부)폐도로 용도폐지업무대행수수료	300*45,000 =	13,500		
2)국유지용도폐지에따른 측량수수료	15,572,000 =	15,572		
202 여비		16,100	15,860	2
01 국내여비		16,100	15,860	6
1)건설행정업무추진	50,000*13*12월 =	7,800		
1)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	50,000*2명*14읍면*1회 =	1,400		
1)개발행위허가및 불법지도단속	50,000*2명*4일*12월 =	4,800		
1)건교부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실태조사	50,000*3명*14읍면*1회 =	2,100		
공유수면내 무단 골재채취 단속		18,461	18,281	
자원보존에 따른 불법 골재채취 단속		18,461	18,281	
201 일반운영비		10,421	10,081	;
01 사무관리비		10,421	10,081	;
1)수용비		950		
2)바다모래불법채취단속비디오녹화테입및편집	750,000 =	750		
2)바다모래단속기록관리 CD구입	20,000*107} =	200		
1)피복비		600		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친환경 도시계획 운영 단위:공유수면내 무단 골재채취 단속

	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여	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2)청원경찰 피복비	100,000*3명*2회 =		600		
	1)급량비			2,140		
	2)골재채취근무자매식비	5,000*2명*214일 =		2,140		
	1)공공요금및 제세			1,031		
	2)골재단속차량(자동차세,자동차보험료,환경개선부담금)	1,031,000 =		1,031		
	1)차량선박비			5,700		
	2)업무용차량유지비	3,200,000 =		3,200		
	2)골재채취단속차량및 차량정비소모품구입	2,500,000 =		2,500		
	202 여비			8,040	8,200	△16
	01 국내여비			8,040	8,200	△16
	1)골재채취단속여비			8,040		
	2)일반직	20,000*15일*12월*1 =		3,600		
	2)청원경찰	20,000*8일*12월*2명 =		3,840		
	2)청원경찰교육	50,000*1*12월 =		600		
				11,664,400	10,319,377	1,345,02
			[균	4,961,287]		
농업기	기반시설구축으로 농가소득안정		[도	404,086]		
			[군	6,299,027]		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농업기반시설구축으로 농가소득안정 단위:밭기반 정비사업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à	∥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		4,186,090	3,437,750	748,340
바리바. 정비기어		[균	3,347,462]		
받기반 정비사업		[도	251,250]		
		[군	587,378]		
			4,186,090	3,437,750	748,340
 발기반 정비사업		[균	3,347,462]		
월기년 경비사업 		[도	251,250]		
		[군	587,378]		
			4,186,090	3,437,750	748,340
401 기상테미브레베		[균	3,347,462]		
401 시설비및부대비		[도	251,250]		
		[군	587,378]		
04 시설비			4,159,790	3,416,093	743,69
1)밭기반정비사업	4,159,790,000 =		4,159,790		
		[균	3,321,162]		
		[도	251,250]		
		[군	587,378]		
06 시설부대비			26,300	21,657	4,64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농업기반시설구축으로 농가소득안정 단위:밭기반 정비사업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	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1)밭기반정비사업	26,300,000 =		26,300		
		[균	26,300]		
			886,824	963,658	△76,83
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		[균	624,225]		
기계화 경식도 목포장사업		[도	46,836]		
		[군	215,763]		
			780,339	898,459	△118,1
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		[균	624,225]		
기계와 경식도 목포장사립		[도	46,836]		
		[군	109,278]		
			780,339	898,459	△118,1
401 시설비및부대비		[균	624,225]		
[] [401 시설미롯구내미		[도	46,836]		
		[군	109,278]		
04 시설비			774,739	891,991	△117,2
1)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	774,739,000 =		774,739		
		[균	618,625]		
		[도	46,836]		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
		[군	109,278]			
06 시설부대비			5,600	6,468	3	
1)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	5,600,000 =		5,600			
		[균	5,600]			
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(한국농촌공사)			106,485	65,199	41,	
402 민간자본이전			106,485	65,199	41,	
01 민간자본보조			106,485	65,199	41,	
1)기계화경작로확포장 부담금(한국농촌공사)	106,485,000 =		106,485			
			848,000	600,000	248,	
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사업		[균	424,000]			
		[군	424,000]			
			848,000	600,000	248,	
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		[균	424,000]			
		[군	424,000]			
			848,000	600,000	248,	
401 시설비및부대비		[균	424,000]			
		[군	424,000]			
04 시설비			841,900	596,220	245	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	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1)소규모용수개발사업	841,900,000 =		841,900		
		[간	417,900]		
		[군	424,000]		
06 시설부대비			6,100	3,780	2,32
1)소규모용수개발사업	6,100,000 =		6,100		
		[균	6,100]		
			332,000	382,237	△50,23
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		[균	265,600]		
		[군	66,400]		
			332,000	382,237	△50,23
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		[균	265,600]		
		[군	66,400]		
			332,000	382,237	△50,23
401 시설비및부대비		[균	265,600]		
		[군	66,400]		
04 시설비			328,500	378,797	△50,2
1)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	328,500,000 =		328,500		
		[균	262,100]		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농업기반시설구축으로 농가소득안정 단위: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.	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	[군	66,400]		
06 시설부대비			3,500	3,440	6
1)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	3,500,000 =		3,500		
		[균	3,500]		
			375,000	375,000	
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		[균	300,000]		
		[군	75,000]		
			375,000	375,000	
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		[균	300,000]		
		[군	75,000]		
			375,000	375,000	
401 시설비및부대비		[균	300,000]		
		[군	75,000]		
04 시설비			372,300	372,300	
1)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	372,300,000 =		372,300		
		[균	297,300]		
		[군	75,000]		
06 시설부대비			2,700	2,700	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농업기반시설구축으로 농가소득안정 단위: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

부서·정책·단위(회계)·세부사업·편성목		예?	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1)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	2,700,000 =		2,700		
		[ਦ	2,700]		
			152,000	150,000	2,00
흙수로 구조물화 사업		[도	76,000]		
		[군	76,000]		
			152,000	150,000	2,00
흙수로 구조물화 사업		[도	76,000]		
		[군	76,000]		
			152,000	150,000	2,00
401 시설비및부대비		[도	76,000]		
		[군	76,000]		
04 시설비			150,400	148,650	1,75
1)흙수로구조물화사업	150,400,000 =		150,400		
		[도	74,400]		
		[군	76,000]		
06 시설부대비			1,600	1,350	25
1)흙수로구조물화사업	1,600,000 =		1,600		
		[도	1,600]		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	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		60,000	60,000	(
누수저수지 보수사업		[도	30,000]		
		[군	30,000]		
			60,000	60,000	(
누수저수지 보수사업		[도	30,000]		
		[군	30,000]		
			60,000	60,000	(
401 시설비및부대비		[도	30,000]		
		[군	30,000]		
04 시설비			59,400	59,460	△6
1)누수저수지 보수사업 5	9,400,000 =		59,400		
		[도	29,400]		
		[군	30,000]		
06 시설부대비			600	540	6
1)누수저수지 보수사업	600,000 =		600		
		[도	600]		
기반정비사업(자체)			4,436,750	300,000	4,136,75
기반정비사업			4,436,750	300,000	4,136,75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401 시설비및부대비		4,436,750	300,000	4,136,75
04 시설비		4,400,190	297,120	4,103,07
1)기반정비사업		4,400,190		
2)증도염산용수로시설	20,000,000 =	20,000		
2)증도경지정리보상비	40,000,000 =	40,000		
2)압해상동서저류지펌프장전기시설교체	8,000,000 =	8,000		
2)지도선도북촌포강시설	20,000,000 =	20,000		
2)도초수다저수지보수	59,400,000 =	59,400		
2)농어촌가로등시설및보수	397,120,000 =	397,120		
2)경지정리배수로정비	1,188,000,000 =	1,188,000		
2)경지정리농로사리부설사업	2,380,000,000 =	2,380,000		
2)지표수보강개발사업기본조사비	80,000,000 =	80,000		
2)자은와우농로포장	49,460,000 =	49,460		
2)자은신성안길포장	49,460,000 =	49,460		
2)자은금포농로포장	40,000,000 =	40,000		
2)비금도고 용수로 제수보	68,750,000 =	68,750		
06 시설부대비		36,560	2,880	33,0
1)증도염산용수로시설사업외10건	36,560,000 =	36,560		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
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	5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			△73,302
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		387,736	461,038	△73,30
201 일반운영비		383,036	454,388	△71,35
01 사무관리비		383,036	454,388	△71,35
1)농업용수법정수질검사수수료		19,900		
2)농업용수(지하수)	120,000*80개소 =	9,600		
2)검사용멸균채수병구입	3,000*1007} =	300		
2)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	100,000*50필지 =	5,000		
2)농림부 국공유재산관리등기부등본발급및 등기이전	5,000,000 =	5,000		
1)급량비		2,500		
2)한해대책 상황근무자 급식비	5,000*4명*100일 =	2,000		
2)기계화경작로등농림사업설계도서작성급식비	5,000*2명*50명 =	500		
1)공공요금및제세		356,996		
2)농어촌가로등전기요금	5,950*4,727등*12월 =	337,508		
2)해수욕장가로등 전기요금	28,000*58등*12월 =	19,488		
1)시설장비유지비		3,640		
2)양수기 정비	40,000*91대 =	3,640		
202 여비		4,700	6,650	△1,99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농업기반시설구축으로 농가소득안정 단위: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	· 편성목	à	∥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01 국내여비			4,700	6,650	△1,950
1)여비			4,700		
2)지하수(관정)관리및 현지점검	50,000*1명*14읍면*2회 =		1,400		
2)농림부소관 국유지 무단점유실태조사비	50,000*1명*14읍면*2회 =		1,400		
2)저수지실태조사및 점검여비	50,000*19읍면출장소*2회 =		1,900		
			5,249,770	7,091,091	△1,841,321
지방도로 건설확포장		[도	89,511]		
		[군	5,160,259]		
			116,770	91,091	25,679
지방도로 유지관리사업		[도	89,511]		
		[군	27,259]		
			116,770	91,091	25,679
지방도로 유지관리사업(신규)		[도	89,511]		
		[군	27,259]		
			100,850	70,341	30,509
101 인건비		[도	89,511]		
		[군	11,339]		
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			83,136	3,188	79,948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/	사업·편성목	예수	난 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1)지방도수로원 인건비(3명)			83,136		
2)기본급	929,700*3명*12월 =		33,470		
		[도	33,470]		
2)상여금	11,156,400*1/3*3명 =		11,157		
		[도	11,157]		
2)정근수당	929,700*50%*2 3] =		930		
		[도	930]		
2)정근수당가산금	40,000*3명*12월 =		1,440		
		[도	1,440]		
2)위험수당	30,000*3명*12월 =		1,080		
		[도	1,080]		
2)가족수당	60,000*3명*12월 =		2,160		
		[도	2,160]		
2)시간외수당	77,460*3명*12월 =		2,789		
		[도	2,789]		
2)휴일근무수당	38,899*3명*12월 =		1,401		
		[도	1,401]		
2)정액급식비	130,000*3명*12월 =		4,680		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측	부사업·편성목	예?	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	[도	4,680]		
2)가계지원비	70,000*3명*12월 =		2,520		
		[도	2,520]		
2)직급보조비	70,000*3명*12월 =		2,520		
		[도	2,520]		
2)교통보조비	120,000*3명*12월 =		4,320		
		[도	4,320]		
2)명절휴가비	929,700*120%*3명 =		3,347		
		[도	3,347]		
2)보험료	9,927,000 =		9,927		
		[도	9,927]		
2)연가보상비	929,700*1/24*3명*12월 =		1,395		
		[도	1,395]		
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			17,714	0	17,714
1)도로교통량조사요원(군도)	39,350*27지점*6명 =		6,375		
		[도	6,375]		
1)군도농어촌도로사업 이전등기			11,339		
2)기본급	32,000*1명*200일 =		6,400		

부서・	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	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2)가산금		3,200*1명*200일 =	640		
2)기말수당		6,400,000*1/3 =	2,134		
2)시간외근무수당		4,912*1*15시간*12월 =	885		
2)주유급휴가수당		32,000*1*30주 =	960		
2)연차유급휴가수	당	32,000*1*10일 =	320		
201 일반운영비			11,720	16,550	△4,830
01 사무관리비			11,720	16,550	△4,830
1)일반수용비			1,500		
2)접도구역관리대	장 제작비	1,500,000 =	1,500		
1)운영수당			2,520		
2)도로관리심의위	원회참석수당	70,000*4명*9회 =	2,520		
1)급량비			500		
2)도로업무추진 급	글식비	5,000*2명*50일 =	500		
1)공공요금및 제세			7,200		
2)연륙,연도교 가	로등 전기료(지도,압해,도초)	200,000*12월*3개소 =	7,200		
202 여비			4,200	4,200	(
01 국내여비			4,200	4,200	
1)도로굴착및 점용하	허가에따른 현지출장비	50,000*2명*14읍면*3회 =	4,200		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지방도로 건설확포장 단위:지방도로 유지관리사업

부서·정책·단위(회계)·세부사업	• 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지방도로정비사업		1,500,000	2,880,000	△1,380,0
군도정비사업		1,500,000	2,880,000	△1,380,0
401 시설비및부대비		1,500,000	2,880,000	△1,380,
02 실시설계비		60,000	0	60,
1)군도정비사업(3건)	60,000,000 =	60,000		
03 토지매입비		110,000	0	110,
1)군도정비사업(3건)	110,000,000 =	110,000		
04 시설비		1,316,500	2,854,080	$\triangle 1,537$
1)군도정비사업(3건)	1,316,500,000 =	1,316,500		
06 시설부대비		13,500	25,920	$\triangle 12$
1)군도정비사업(3건)	13,500,000 =	13,500		
지방도로정비사업		3,633,000	4,120,000	△487
농어촌도로정비사업		3,633,000	4,120,000	△487
401 시설비및부대비		3,633,000	4,120,000	△487
02 실시설계비		100,000	0	100
1)농어촌도로정비사업(6건)	100,000,000 =	100,000		
03 토지매입비		513,000	0	513
1)농어촌도로정비사업(6건)	280,000,000 =	280,000		

	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	목	ć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1)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진입도로및 시험포장	233,000,000*1권 =		233,000		
0	4 시설비			2,989,400	4,082,920	△1,093,52
	1)농어촌도로정비사업(6건)	2,989,400,000 =		2,989,400		
0	6 시설부대비			30,600	37,080	$\triangle 6,48$
	1)농어촌도로정비사업(6건)	30,600,000 =		30,600		
				34,042,000	25,898,550	8,143,45
그게기저기시			[균	28,380,000]		
·조제시설사업			[도	2,280,000]		
			[군	3,382,000]		
				34,042,000	25,898,550	8,143,45
방조제시설/	ા લ		[균	28,380,000]		
당소세시설/ 	가입 -		[도	2,280,000]		
			[군	3,382,000]		
				10,647,000	4,575,000	6,072,00
국가관리	방조제보수공사(계속)		[균	10,645,000]		
			[군	2,000]		
202	व्यं मी			2,000	0	2,00
0	1 국내여비			2,000	0	2,00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	편성목	d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1)여비			2,000		
2)불안전방조제현지점검	50,000*2명*20회 =		2,000		
401 기상에 마무리네			10,645,000	4,575,000	6,070,00
401 시설비및부대비		[균	10,645,000]		
04 시설비			10,620,517	4,558,530	6,061,98
1)국가관리방조제	10,620,517,000 =		10,620,517		
		[균	10,620,517]		
06 시설부대비			24,483	16,470	8,01
1)국가관리방조제	24,483,000 =		24,483		
		[균	24,483]		
			23,395,000	21,323,550	2,071,45
기비키키비크레 다스코카(케스)		[균	17,735,000]		
지방관리방조제 보수공사(계속)		[도	2,280,000]		
		[군	3,380,000]		
201 일반운영비			3,000	4,550	△1,55
01 사무관리비			3,000	4,550	△1,55
1)급량비			1,000		
2)재해위험매식비	5,000*5면*40명 =		1,000		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	편성목	C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1)임차료			2,000		
2)방조제응급복구임차료(2종)	2,000,000 =		2,000		
			22,899,000	21,219,000	1,680,000
401 기상대리 H 에대		[균	17,735,000]		
401 시설비및부대비		[도	2,280,000]		
		[군	2,884,000]		
04 시설비			22,858,210	21,085,446	1,772,764
1)배수갑문 스크린설치(7지구)	70,000,000 =		70,000		
1)지방관리방조제	22,788,210,000 =		22,788,210		
		[균	17,694,210]		
		[도	2,280,000]		
		[군	2,814,000]		
06 시설부대비			40,790	133,554	△92,764
1)지방관리방조제	40,790,000 =		40,790		
		[균	40,790]		
402 민간자본이전			493,000	100,000	393,000
01 민간자본보조			493,000	100,000	393,000
1)방조제 개보수(07년군비미부담)	493,000,000 =		493,000		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개선 단위:전천후 육상 대중교통망 구축 (단위:천원)

부서·정책·단위(회계)·세부사업	• 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춤형 대중교통 체계 개선	4,862,897	1,014,763	3,848,13	
전천후 육상 대중교통망 구축		2,770,947	801,400	1,969,54
농어촌버스손실보상		13,100	1,400	11,7
101 인건비		11,700	0	11,7
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		11,700	0	11,7
1)버스손실보상 조사원 인부임	37,500*39노선*4일*2회 =	11,700		
202 여비		1,400	1,400	
01 국내여비		1,400	1,400	
1)버스 손실 보상금 산정자료 현지 조사	50,000*1명*14개소*2회 =	1,400		
버스 승강장 설치		281,625	0	281,6
201 일반운영비		225	0	
01 사무관리비		225	0	
1)버스승강장 설치 기록관리		225		
2)필름	2,500*30통 =	75		
2)인화	150*1,000¤} =	150		
202 여비		1,400	0	1,
01 국내여비		1,400	0	1,
1)버스 승강장 설치 점검	50,000*14개읍면*2회 =	1,400		

부서:건설교통과

정책: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개선

2)자동차세

2)보험료

단위:전천후 육상 대중교통망 구축

전년도 예산액 부서 · 정책 · 단위(회계) · 세부사업 · 편성목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0 280,000 280,000 04 시설비 280,000 280,000 1)버스 승강장 설치(채무부담) 280,000,000 = 280,000 사업용 자동차 유류대 지원 833,000 800,000 33,000 307 민간이전 833,000 800,000 33,000 09 운수업계보조금 833,000 800,000 33,000 1)사업용자동차 유류대 833,000,000 = 833,000 버스공영제 추진 1,643,222 0 1,643,222 101 인건비 396,900 0 396,900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6,900 0 396,900 1)공영버스운전자인부임 58,800원*270일*25명 = 396,900 201 일반운영비 462.422 0 462,422 01 사무관리비 1,800 0 1,800 1)버스 공영제 추진 매식비 5,000*6명*60일 = 1,800 02 공공운영비 443,122 0 443,122 1)공공요금및제세 73,557

(단위:천원)

277,200원*20대 =

3,304,650*20대 =

5,544

66,093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개선 단위:전천후 육상 대중교통망 구축 (단위:천원)

	부서·정책·단위(회계)·세부사	업·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2)환경개선부담금	96,000*20대 =	1,920		
	1)차량선박비		369,565		
	2)차량유류대	15,738,850*20대 =	314,777		
	2)차량유지비	2,739,400*20대 =	54,788		
	03 행사운영비		17,500	0	17,50
	1)공영버스 운행 개시 행사	2,500,000*7개소 =	17,500		
	202 여비		3,900	0	3,90
	01 국내여비		3,900	0	3,90
	1)공영버스 추진	50,000*6명*13개읍면 =	3,900		
	301 일반보상금		400,000	0	400,00
	12 기타보상금		400,000	0	400,00
	1)버스공영제 시행에 따른 보상	400,000,000 =	400,000		
	405 자산취득비		380,000	0	380,00
	01 자산및물품취득비		380,000	0	380,00
	1)공영버스 구입	380,000,000 =	380,000		
해	상 교통체계 개선		1,874,250	66,700	1,807,55
	여객선 야간운항 추진		1,045,500	5,000	1,040,50
	201 일반운영비		40,500	0	40,50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개선 단위:해상 교통체계 개선

부서 · 정책 · 단위(회계) · 세부사	업·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01 사무관리비		15,500	0	15,500
1)일반수용비		14,600		
2)여객선야간운항 인쇄물 제작		14,600		
3)포스터(칼라)	5,000*200দ]*5ই] =	5,000		
3)전단지(칼라)	500*2,000দ]*5ই] =	5,000		
3)현수막(칼라)	60,000*12매*5회 =	3,600		
3)행사사용안내물	200*1,000দ]*5ই] =	1,000		
1)급량비		900		
2)여객선등 야간운항 추진 매식비	5,000*6명*30일 =	900		
03 행사운영비		25,000	0	25,000
1)여객선 야간운항 협의 및 운항개시	5,000,000*5회 =	25,000		
202 여비		5,000	5,000	0
01 국내여비		5,000	5,000	0
1)여객선등 야간운항업무 추진	50,000*20명*5회 =	5,000		
307 민간이전		1,000,000	0	1,000,000
02 민간경상보조		1,000,000	0	1,000,000
1)운수업에 대한 운영 지원	1,000,000,000 =	1,000,000		
작은 섬 도선 건조		191,400	1,400	190,000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개선 단위:해상 교통체계 개선

부서·정책·단위(회계)·세부사업·편/	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202 여비		1,400	1,400	0
01 국내여비		1,400	1,400	0
1)도선건조현지검검	50,000*2명*2회*7개소 =	1,400		
307 민간이전		190,000	0	190,000
02 민간경상보조		190,000	0	190,000
1)작은 섬 도선건조 지원	47,500,000*4칙 =	190,000		
작은 섬 도선 운영비 지원		236,400	60,300	176,100
202 여비		3,400	2,800	600
01 국내여비		3,400	2,800	600
1)도선운영비지원금산정현지점검	50,000*2명*17척*2회 =	3,400		
307 민간이전		233,000	57,500	175,500
02 민간경상보조		233,000	57,500	175,500
1)작은 섬 도선 운영비 지원	233,000,000 =	233,000		
전천후 수상택시 도입		400,950	0	400,950
202 역비		1,950	0	1,950
01 국내여비		1,950	0	1,950
1)수상택시도입추진	50,000*3명*13일 =	1,950		
307 민간이전		399,000	0	399,000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개선 단위:해상 교통체계 개선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02 민간경상보조		399,000	0	399,00
1)수상택시 운영비 지원	399,000,000 =	399,000		
교통사고 확줄이기 추진		167,290	146,663	20,62
교통(사망)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		137,800	109,660	28,14
201 일반운영비		17,800	9,660	8,14
01 사무관리비		700	9,660	△8,96
1)일반수용비		700		
2)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기록 관리		700		
3)필름	2,500*100통 =	250		
3)인화	150*3,000장 =	450		
02 공공운영비		17,100	0	17,10
1)공공요금및제세		13,300		
2)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	25,000*38개소*12월 =	11,400		
2)전기안전 점검 수수료	50,000*38개소 =	1,900		
1)시설장비 유지비		3,800		
2)경보등	100,000*28개소 =	2,800		
2)경광등	100,000*10개소 =	1,000		
401 시설비및부대비		120,000	100,000	20,00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개선 단위:교통사고 확줄이기 추진

부서·정책·단위(회계)·세부사업·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04 시설비		120,000	100,000	20,000
1)교통(사망)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(5종)	100,000,000 =	100,000		
1)교통신호등(경보등) 정비	1,000,000원*20개소 =	20,000		
교통안전캠페인 실시		29,490	37,003	△7,513
201 일반운영비		26,890	27,303	△413
01 사무관리비		22,725	27,303	△4,578
1)일반수용비		22,725		
2)현수막 제작 설치	35,000원*2종*15개소 =	1,050		
2)교통사고예방 홍보물 제작	100,000원*5종 =	500		
2)사진기록관리기록		225		
3)필름	2,500원*30통 =	75		
3)인화	150원*1,000메 =	150		
2)자동차검사안내서 제작	150원*15,000장 =	2,250		
2)자동차과태료부과고지서 제작	80,000원*10박스 =	800		
2)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수수료	10,000,000 =	10,000		
2)교통안전대책 추진 매식비	5,000원*6명*30일 =	900		
2)경운기 후부 반사지 제작	500,000원*14개읍면 =	7,000		
02 공공운영비		4,165	0	4,165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개선 단위:교통사고 확줄이기 추진

	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시	·업 · 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1)과태료고지서등 우편요금		4,165		
	2)일반우편	250*13,220통 =	3,305		
	2)등기우편	1,720원*500통 =	860		
	202 여비		2,600	9,700	△7,1
	01 국내여비		2,600	9,700	△7,1
	1)교통안전캠페인 추진	50,000원*6명*4회 =	1,200		
	1)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처리	50,000원*2회*14개읍면 =	1,400		
여.	객 운수 종사자 관광도우미화		35,000	0	35,1
	운수 종사자 교육		35,000	0	35,0
	201 일반운영비		14,000	0	14,
	01 사무관리비		14,000	0	14,
	1)운수종사자의복구입	25,000*560벌 =	14,000		
	307 민간이전		21,000	0	21,0
	02 민간경상보조		21,000	0	21,
	1)운수종사자 교육비 지급	21,000,000 =	21,000		
귀	기성객 특별수송 대책		15,410	0	15,
	명절 및 피서철 귀성객 특별수송		15,410	0	15,
	201 일반운영비		13,160	0	13,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개선 단위:귀성객 특별수송 대책

	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	• 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	01 사무관리비		13,160	0	13,16
	1)안내홍보물 제작(칼라)	100*2,500*2회 =	500		
	1)현수막 제작 설치	50,000원*12매*2회 =	1,200		
	1)입간판 제작 설치	80,000원*6매*2회 =	960		
	1)명절귀성대책 추진 의복구입	150,000원*20벌 =	3,000		
	1)귀성객 특별수송 업무추진 매식비	5,000원*50명*15식*2회 =	7,500		
	202 여비		2,250	0	2,2
	01 국내여비		2,250	0	2,2
	1)명절 및 피서철 귀성객 특별수송 추진	50,000원*15명*3회 =	2,250		
뱅정운	영경비(건설교통과)		20,480	17,990	2,4
기분	본경비		20,480	17,990	2,4
	기본경비		20,480	17,990	2,4
	201 일반운영비		16,280	13,790	2,4
	01 사무관리비		16,280	13,790	2,4
	1)수용비		11,280		
	2)부서운영사무용품비	8,000,000 =	8,000		
	2)과프린트기토너구입(흑색,칼라)	360,000*4대*2회 =	2,880		
	2)사무용팩스구입	100,000*43 =	400		

부서:건설교통과 정책:행정운영경비(건설교통과) 단위:기본경비

부서·정책·단위(회계)·세부사업·편성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
1)급량비		5,000		
2)기본업무수행을위한 특근급식비	5,000*20*50 =	5,000		
203 업무추진비		4,200	4,200	0
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		4,200	4,200	0
1)건설교통과 부서운영	350,000*12월 =	4,200		